

의안번호	제2752호
의 결	2024.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향숙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4. 2. 21.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향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2
----------	------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김향숙, 김석한, 우정욱,
이쌍자,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이정숙 의원(8인)

1. 제안이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12호
 - 예고기간: 2024. 3. 4.(월) ~ 2024. 3. 11.(월)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2. “맨발 걷기”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되거나 관리되는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